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內務局

日時 1995年11月24(金) 午後2時
場所 內務委員會會議室

(14時 16分 監査繼續)

○委員長 吳世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어제 이어서 內務局 대상으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가 실시됨을 宣言합니다.

(의사봉 3打)

오늘은 어제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내용에 대하여 答辯을 듣고 이어서 委員님들의 質疑와 被監査機關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監査進行方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浩助; 答辯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委員님들께서 총 21건을 質問하셨습니다. 이 중 김재인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10건과 鄭海純委員님 質疑中 1건, 11건은 書面으로 答辯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質問 순서에 따라서 鄭海純 委員님과 金永俊 委員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海純 委員님께서 行政實績審査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환평가방법의 도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환평가방법은 현장 위주의 실적심사를 할 때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行政實績審査는 區政全般에 대해서 우리 本廳에서 관계되는 各室·課에서 各區의 추진하는 業務를 書面審査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환평가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그러한 事項들에서 교환평가방법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海純 委員님께서 승진후보자명부는 公務員 本人 이외에는 공개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監査를 위해 요구할 시에는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意見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質問하신 바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공개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에 의거해서 명부에 등재된 公務員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해서 本人에게만 명부 순위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요구하신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海純 委員; 아니 별도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內務局長 李浩助; 원칙적으로는 關係規定에 의해서 등재된 公務員의 요구가 있을 때 本人에게만 명부 순위를 알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海純 委員; 監査하는데도 안 된다, 그 외에는? 總務課長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內務局長 李浩助; 人事課長 소관입니다만.....

○鄭海純 委員; 人事課長.

○委員長 吳世根; 鄭海純委員님 會議進行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答辯이 끝난 후에 補充質疑時 質疑를 해 주십시오. 일단 答辯을 듣고.

○鄭海純 委員; 네, 그렇게 합시다.

○內務局長 李浩助;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들로 法人設立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계층 축소와 관련하여 洞事務所制度를 폐지할 경우 이 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方案을 연구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洞의 축소가 전제가 되고 또 행정사법인의 역할 등 諸般事項이 종합적으로 考慮되는 가운데 이런 事項들은 全國的 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事項으로 향후 이러한 行政環境이 조성되고 또 변화가 있을 때 參考事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鄭海純 委員님이 行政事務監查資料에 의하면 區民體育센터 620個所 中 永登浦는 3個所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확충 계획은 어떠한지, 이러한 곳은 얼마나 더 확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質問하셨습니다.

여기서 620個所라는 數的概念은 동네 體育施設을 말씀드리려는 자료입니다. 우리 市는 市民들께서 居住地, 住居地 가까운 곳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동네 뒷산이나 근교산의 遊休地나 空地에 體育施設을 설치하고 있고, 매년 이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한 30個所를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金永俊 委員님께서 서울市議員의 儀典上 예우는 區廳의 副團體長에 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職汲에 해당되느냐고 그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서울特別市議員 예우 협조 공문으로 區廳單位 행사시에 選

出職은 任命職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指針이 나갔고, 예를 든다면 國會議員, 다음에 市議員, 區議員, 區單位 機關長 順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소개하라고 本廳에서 指針이 나간 바 있습니다. 市議員님이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현재로서는 확정한 바 없습니다.

市議員님들은 千百萬 전체 市民을 대표하는 議員님들이기 때문에 一般公務員과 같은 계층제하의 어느 職級에 속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서울市 公務者들이나 區 公職者들이 市議員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指導 監督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本俸이 50萬원…….」 하는 委員 있음)

좀 대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50萬원은 굉장히 프렉시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永俊 委員님께서서는 市 公務員에 대한 昇進方法이 94年 이전까지는 50% 審査, 50% 試驗이었는데 94年 이후 소위 시험 승진에 의한 폐단을 이유로 審査로 바뀌었다. 그리고 在職公務員의 資質向上을 위해서도 試驗制度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制度를 다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96年度에 5級 승진예정 인원은 얼마나 되고, 시험실시 시기는 언제이며, 시험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워 놓은 사람과 업무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公務員에 대한 服務指導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級 이하 下位職 公務員의 승진임용은 地方公務員任用令 第30條와 서울 特別市人事規則 第34條에 의해서 審査와 시험을 병행 또는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94年度와 95年度의 경우에는 昇進人員이 대규모로써 試驗昇進을 실시할 경우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당시 國家的 懸

案業務인 4大 地方選舉와 大型事故 발생, 교통대책 등 중요한 懸案業務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불가피하게 審査昇進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試驗制度 부활 여부는 自治區 任用權者인 區廳長과 협의해서 승진시기, 적정한 인원, 業務懸案 등 諸般與件을 감안해서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級에의 승진예정인원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내년도 1/4분기 중에 조기 실시하는 방안을 試驗 主務部處인 內務部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부 대상자들이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服務管理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職員들 資質向上 측면과 일선 對民業務 관계를 여러 가지 考慮해 볼 때, 사실상 시험시기가 되면 특히, 事務官試驗 시기가 되면 즉 9級부터 올라간 공직자들은 事務官 승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幹部로서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공부를 평생 公職生活하면서 마지막 공부하는 기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가능한 한 對民 民願業務 處理에 크게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또 同僚職員들..... 적정한 배치 등을 통해서 너무 장기간은 아니지만 시험기간은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시켜 주는 것도 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히 對民業務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服務 指導. 監督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勳褒章 없이 10年 미만 者가 7年餘만에 4級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昇進任用 관련 법규상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 승진배수, 징계 등 제한사유 저축 여부 등을 검토한바, 자료상으로는 違法

事項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當事者의 승진시점인 80年度의 昇進審査 기록확인이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인적요건을 보았을 때 그 당시, 書記官 승진할 그 당시에는 본인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업무 수행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승진요건이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80년대 중반에 4級에의 평균승진 소요년수가 8年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무리한 승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世根; 議事進行發言 입니까?

○金永俊 委員; 補充質疑…….

○委員長 吳世根; 議事進行發言 外에 補充質疑는 삼가 주십시오. 答辯 이후에 補充質疑는 하세요.

(「議事進行發言 하겠는데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世根; 네, 鄭海純 委員 議事進行發言해 주세요.

○鄭海純 委員; 質問事項에 대한 答辯할 때 答辯의 내용이 質問事項과 동떨어졌을 때 시한적으로 그 얘기를 바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되기 때문에 도중에 이의가 있어서 얘기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會議 運營의 妙를 기하기 위해서 도중에 얘기를 해서 發言權을 얻어서 補充質問하는 것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委員長 吳世根; 補充質疑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一括答辯後에 해 주세요.

○鄭海純 委員; 아니, 다시 말씀드리는데 質問事項과 答辯하는 事項이 동떨어졌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시간을 끌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發言權을 주어서 얘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一問一答式으로 하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委員長 吳世根; 鄭海純 委員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補充質疑 때 해 주세요 委員님들의 質疑한 내용이 많습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鍾來 委員; 지금 鄭海純 委員 말씀은 答辯 과정이 質問內容하고 동떨어졌을 때 계속 듣고만 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부분에서 補充質疑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오히려 낭비니까 會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答辯內容이 상이할 때는 순간적으로 끊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받아 주라는 이 말이지요.

○委員長 吳世根; 어제도 補充質疑하는 내용과정에서 그냥 執行部하고 또 우리 委員님하고 그냥 막 주고 받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됐습니다. 會議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꼭 해야 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進行 發言도 없이 執行部와 하면 衆口難防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외에는 협조 좀 해 주세요.

○鄭海純 委員; 그런데 委員長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會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發言하는 내용과, 質問하는 내용과 答辯하는 내용이 동떨어졌을 때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金永俊委員이나 金鍾來委員이나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 안하시고 자꾸 그렇게 나가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委員長 吳世根; 鄭海純 委員님, 議事進行發言을 정식으로 얻어서 하세요.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金鍾來 委員 質疑해 주세요.

○金鍾來 委員; 지금 저희가 關係公務員 앞에서 會議進行에 관한 事項을 갖고 討論하고 계신데 지금 委員長님께서서는 합의정신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자 이 뜻이고, 또 저희 監査委員님들께서는 정확한 答辯을 듣자 해서 그때 그때 어떤 타임을 놓치면 꼭 듣고자 하는 答을 듣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원활한 會議進行을 위해서는 委員長이 진행하는 대로 저희 委員들은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우리 鄭海純 委員님 이해 좀 해 주시고, 꼭 중요한 그런 事項이라면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委員님들이 質疑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鍾來 委員, 議事進行發言 해 주세요.

○金鍾來 委員; 지금 鄭海純委員님이 주장하는 것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質問한 내용하고 答辯한 내용이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다 듣고 나서 다시 그 내용이 틀렸으니까 다시 答辯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委員長 말씀대로 효율적인 會議進行이 되지 못해요, 감사진행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一問一答式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 내용하고 答辯하는 내용이 전혀 상치됐을 때.....

○委員長 吳世根;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한 내용과 執行部에서 꼭 맞게, 質疑한 내용과 그렇게 답변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조 좀 해 주시라고 그랬고, 꼭 答辯하는 도중에 補充質疑라고 할까, 答辯이 미흡했을 때 그렇게 간단하

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냥 사회자가 있고 한데 執行部하고 그냥 막 質疑를 하고 그랬을 때 運營의 妙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金鍾來 委員; 그러니까 質問 主旨하고 答辯내용이, 그 答辯 과정에서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主旨 자체가 틀려 버리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委員長 吳世根; 가능한 한 補充質疑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質疑 내용과 다를시 議事進行發言을 얻어서 質疑를 해 주세요, 정식으로.

(「議事進行發言……」 하는 委員 있음)

內務局長, 答辯하세요. 일단 答辯하세요. 答辯하시고 정식으로 補充發言을 얻어서 미흡한 答辯이 있을 때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質問을 해 주세요. 일단 答辯하세요.

○內務局長 李浩助; 계속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金永俊 委員님께서 民選團體長 출범 이후 서울시 및 25개 自治區에서 특별채용한 163명의 내용을 보면 비서직, 별정직, 특수분야 근무자 등을 民選 前이나 똑같이 평상시 部署別 缺員에 대한 일상적 충원인데도 市民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정확히 하도록 지적 말씀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民選團體長 취임한 이후 163명을 특별채용한 데 대해서 一般市民들께서 단순한 수적개념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事項에 대해서 특별채용 부서별로 해서 명확히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金永俊 委員님께서 公務員의 士氣振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勳褒章 등 政府褒賞이 금년 계획은 200여 명이나 현재 실적은 102명만 施賞되었는데 나머지 100여 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施賞이 가능한지 質問하셨습니다.

公務員의 士氣振作 차원에서 施賞關係는 당사자들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 事項들이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이런 事項까지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政府褒賞은 매년 政府計劃에 따라서 금년에는 204名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施賞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褒賞 102名만 지난 6月末에 施賞했고, 하반기 褒賞 102名은 이미 總務處에 추천에서 12月末에 계획대로 施賞할 예정입니다.

金永俊委員님께서 7月 1日字 自治區가 탄생하고 나서 區廳의 幹部職公務員 보직 이동이 거의 동결되고 있는 데 대한 해소방안으로 市에서 통합관리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물으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業務報告 또는 委員님의 質疑 答辯을 통해서 人事交流에 있어서 그동안 어려웠던 점, 또 人事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機關苦衷, 뭐 個人苦衷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自治制 기본원리나 人事關係 實定法上으로는 統合管理制度로의 환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교류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自治團體間 轉出入制度를 적극 권장해서 인사고충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6級 이하 하위직 人事苦衷者 交流는 市單位에서 교류희망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내 자료를 교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소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制度的 경직성을 운영측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우리 서울市 자체, 또 自治區, 또 人事關係, 地方公務員人事關係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內務部등과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俊 委員님께서 本廳 局長級 幹部 中 특정 지역출신은 기술직 4명에 불과하고 행정직에는 1名도 補職者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통계상 내용으로 보시면 委員님 質問內容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사권자가 어느날, 순간에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우대했거나 배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랜기간 동안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 바탕에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특정지역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인사관련 實務從事者들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會議進行을 위해서는 委員님들의 양식에 따라 會議進行方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세요.

金永俊 委員 質疑해 주세요.

○金永俊 委員; 본 質疑에 앞서 좀전에 局長님께서 答辯하신 보충질의를 하고 本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5級에서 4級으로 昇進하게 되는 所要年數가 속기록에 분명히, 또 局長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8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354페이지 本委員이 資料要求한 내용에 의하면, 한 번 펴 보세요, 354페이지. 人事課長이 펴 보세요. 92年, 93年, 94年, 95年은 14年, 약 이것이 14年 7個月이 되고 87년부터는 11年 4·5個月 되는데 그때 당시에 80年度는 8年 될지는 자료에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봐서 여기의 마이크를 지금 內務局 산하의 全職員이 듣고 있

고, 어디 가거나 市 公務員으로 얘기했을 때 某 區廳에 특정 지 출신인 이 某局長이 7年만 73年에서 80年 7年만에 昇進했는데 여기 자료도 나오듯이 딴 분들은 89名이 다 10年 이후에 승진을 했는데 勳褒章, 및 特別特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특별히 승진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걸 물었던 것인데 그 때 당시에 80年度에는 5級에서 4級으로 昇進하는데 8年 정도 걸렸는데 이것은 本 資料가 없었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상태, 최근에 있는 本委員이 資料要求한 여기 昇進所要年數는 보통 10年이 넘었고 그때도 그 자료에도 10年이 넘었습니다. 단 그 사람만 한사람만 자료에 나와있어요. 공개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87페이지, 제가 그러나 여기 行政監査 中에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189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89名은 10年 이후에 다 승진을 했는데 단순계산으로 볼 때 그분만 7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보충 질의는 그렇고,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단 그분을 질책하는 그것보다는 그 승진에 대해서, 公務員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같이 승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本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670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答辯도 總務課長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年度 서울시 불법주정차 위반에 의한 스티커 발급으로 인한 범칙금부과에 있어서 95年 1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소위 8個月만에 180萬餘 件에 돈은 642億원을 부과하여 그 중

약 39% 72萬餘 件에 256億원은 징수하고 61% 106萬餘 件에 대해서 386億원은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계산으로 환산해 볼 때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9月부터 12月까지 이에 준한 차량을 단속한다고 볼때 연중 서울시에서 駐停車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60萬餘件으로 실적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150萬臺에 대한 1차량당 평균 年 1回 1.7회에 駐車團束을 당하는 것으로써 61%의 체납결과는 이 시민이, 시민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있는 우리市 職員도 또 公務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당했어요.

61%의 체납결과는 시민이 이 駐車團束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신한 것이고 두번째,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과잉 단속으로 보여지는데 이의 局長님의 意見, 그리고 駐停車團束에 있어서 시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을 신중하게 예컨대 그냥 車를 세워놓고 1分 정도에서 뺄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신중히 불편이 없도록 계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局長님 아니면 總務課長 공감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도대체 차 駐停車에 대해서 8個月만에 642億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金東洙 委員 質疑하십시오.

○金東洙 委員; 金東洙 委員입니다.

內務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그간 資料準備에 또 이틀간 계속되는 監査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會議室에 또 복도에 內務局 職員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監査는 이 직원들이 제가 볼 적에는 50餘 名이 어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監査準備 답변 자료를 해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겠지만, 이것 또한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市民이 民願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시간을 내서 우리 서울市廳 內務局까지 와 가지고 방문해서 民願을 처리하려고 할 때, 여기까지 오려면 알다시피 날씨도 춥고, 또 도로체증도 막히고 이렇게 해서 本廳까지 오려면 우리 서울市 거리가 먼 데는 1時間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이 현재 그 市廳에 있는 職員들한테 民願을 얘기할 적에는 아마 그 公務員들이 지금 事務室에 있는 職員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의회에서 우리 內務局 監査를 하기 때문에 監査 中이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다면 그 民願人은 또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局長님께서도 꼭 필요한 관계공무원만 대기하고 市廳 사무실에 가서 本 業務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內務局長 李浩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洙 委員;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민원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同僚委員들이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東草 公務員 修鍊院의 건립공사가 있는데 그 公務員 修鍊院은 서울市 公務員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職員修鍊院을 건설해서 職員들의 세미나라든지 체력단련 또 휴가철에 요즘

휴가철에 사람들이 밀리기 때문에 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우수한 公務員들을 선발해서 연중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휴양소를 설치하게 되었고, 또 휴양소를 건설할 적에는 인근에 있는 휴양소, 거기에 보면 콘도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 월등히 나은 최신행 건물을 짓고 또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하겠다는 이러한 報告도 받았습시다.

또 서울市 公務員들의 사기진작책으로 江原道 속초시 노학동 소재에 수련원을 건립하기로 하여 1993年 7월에 착공했습니다. 또 96年 7월에 완공키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本委員이 착공식장에 현지방문해서 저희들이 業務報告도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지금 施設變更을 해 가지고 많은 豫算이 所要가 되었어요. 이것을 볼적에는 관행 즉 과거부터 내려오던 習慣 이런 것이 아니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도로 하나 건설한다고 할 적에 항시 보면 설계는 가격을 덤핑해서 싸게 넣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計劃 變更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問題點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公務員 修鍊院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計劃 변경으로 인해서 施設 보완 명목으로 23億 3,000萬원이 증액이 되었군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총 건립비가 133億 9,600萬원인데 本 委員會에서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는 束草市 建築條例에 의거, 2億이 책정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옥외 테니스장 같은 것 수영장, 거기에도 또 2億이 증액되었어요. 74年 당시 저희들이 報告받을 적에는 건물에

이상이 없고 제가 建設委에 있었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業務報告를 정확히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2億이 증액이 되고 또 온천수 개발에 6億이 증액이 되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LPG를 도시가스로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건설할 당시에 설계를 내고 할적에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로비 그 실내 장식부분에서도 5億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애당초 뭐 실내장식을 금액을 계산치 않고 예정도 없이 설계를 하고 금액 조정을 안했다는 것인지.

그때 당시 서울시 修鍊院은 서울시 公務員들이 사용하는 수련장이기 때문에 인근 휴양소나 도 어느 곳보다 아주 월등하게 한다는 報告였고, 최대의 시설로 실내장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번에 또 이렇게 豫算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옥외 부대시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보완으로 했는데 이것도 3億원이 증액 마찬가지로예요. 사실 거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3億원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는 주위환경이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돼요. 주위환경이 뭐 있습니까? 그 산골에 갔다가 束草 들어가는 입구쪽인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소나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어딘가 또 하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시설문제를 잘해라 조경을 좀 특수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휴식공간을 충분히 해라. 이렇게 다 報告해놓고 뭐 더 잘하려고 보니까. 豫算이 더 증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소나무밭입니다. 뭐 소나무도 크게 없어요. 거기 밑에쪽으로 소나무가 크고, 그래

서 그 증액된 부분들이 本委員 생각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局長께서는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그리고 설계도면, 즉 단면도나 입면도 지층평면도, 옥상평면도, 조정, 하수, 주차 이런 부분 위생배관평면도, 창호도 기타 일절 관련 서류를 좀 제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변동사항 부분도 관련서류를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豫算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1억 8,400萬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8,420坪 坪當 제가 뭐 정확한 계산은 안했지만 언뜻 보기에 25만원 상당의 대금이 지불됐는데. 거기가 상당히 그 束草市와는 떨어져 있고 林野이기 때문에 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울로 보면 평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골로 볼적에는 상당히 대지매입비가 좀 많이 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 그 대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 확인서를 本委員한테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지하차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또 生活體育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 마을 뒷산에 生活體育公園化를 하기 위해서 95年度 65個所를 확충하고, 661個 施設을 했고, 또 整備를 315個所에 7,160個 施設을 했다고 業務報告를 局長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95年에도 20億원의 自治區費로 65個所 整備, 또 매년 25個所 이상을 확충할 計劃이라고 하는데 서울市民의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마을 뒷산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施設하여 줌으로 市民이 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조깅, 배드민턴, 각종 運動施設이 되어 있어 많은 市民들이 건강을 위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問題는 그 마을 뒷동산의 임야들이 보편적으로 거의가 다 그린벨트나 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에 運動施設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各 區에서 물론 生活體育問題 때문에 施設을 자체에서,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 놓으면 돈을 배드민턴場 같은 데는 한 번에 施設을 하려면 千餘萬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부 철거를 하고 이래서 오히려 住民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겠지요? 임야에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樹木이 있기 때문에, 樹木이 몇 년에, 자라면 벨 수 없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좀 확실하게 짚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배드민턴場이나 이러한 體育施設을 갖추어 놓는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常識으로는 地域에서 의자를 하나 해 놔다, 뭐 미끄럼틀을 하나 해 놔다, 뭐 그네를 하나 해 놔다, 이런 것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區廳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報告를 해요. 그리고 뭣하면 또 때려 부시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場을 설치하는 데는 아마 山이기 때문에 綠地課, 葺土木課, 生活體育課, 이런 데에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場같은 것은 공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배드민턴을 못쳐요. 날 좋은 날만 치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알기 쉽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웬스식으로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제가 저희 地域같은데도 사실 이것을 많이 원하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團體에서, 배드민턴 團體에서, 사실 이것이 生活體育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團體거든요. 오히려 區廳이나 市에서는 권유하는데 하려고 돈을 들여서 기천만원씩 들여서 해 놓으면 부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러한 生活體育에 대한 施設을 좀 협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공문으로 해서 施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區나 地方自治, 서울시 돈을 안 가지고도 자체에서 運動施設을 많이 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좋은 조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요망하는 차원에서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防衛協議會 회비납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區에 防衛協議會가 어느 區에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區에서도 會費를 받지만 각 洞에서도 會費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鍾路區나 九老區, 銅雀區, 龍山, 江北區, 이런 데는 자료에 의하면 會費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本委員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鍾路區가 三豊事故 때 軍部隊에 2,355萬 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九老區 역시 軍部隊에 2,717萬 8,000원을 지원했어요. 또 龍山,

江北 역시 軍部隊에 現金을 지원해 주었어요. 會費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해 놓고 어떻게 防協에서 현금을 지불했는지, 그 돈이 어디에서 날아온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자료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돈으로 정말 지원해 주었는지 제가 볼 때는 內務局長께서도 확인을 못했으리라 믿고, 銅雀區같은 데는 이해가 갑니다. 會費도 받지 않고 지원도 없으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軍部隊 지원 안해 주었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다른 區는 뭘니까? 鍾路區나 九老區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또 軍部隊를 지원해 주고, 경찰서, 노인정,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本委員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區廳長들이 區廳에서 虛僞報告를 하는 것은 지금 특히 監査 受監資料를 보내주는 자료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職務遺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法에 88年 7月 이후에는 각종 성금 접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防衛協議會 會費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書類上 會費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해 놔는데 안 받으면 部隊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지, 안 받았다고 그리고 部隊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눈가림, 눈감고 야용하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會費를 못 받게 됐으면 제가 아는 것으로는 區에서 자체 친목회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監査資料를 제출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本委員도 區 防衛協議會에 제가 92年度까지 當然職 委員으로 있었기 때문에 當然職은 會費를 안 내지만 위에서 받은 돈은 상당수입니다. 各 企業體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부터 會費를 안 받았다니가 이것은 도무지 자료에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公務員이 權威主義를 탈피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여기 委員님들이 다 아마 地域에 방범위원회, 방위협의회 다 아마 뭐 顧問이나 이 정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議員이기 때문에. 지금도 會費를 받지 않는데, 九老區 같은 데, 지금 종로같은 데 보면 하나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各 區에 보세요, 돈 받은 것 보면 會費가 순엥터리로 말아야,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虛僞報告는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國防豫算이나 모든 분야에 다 지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방위회비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방위협의회의 존재를 없애는 것으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해체할 수도 있는 것인지 좀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事項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質疑하실 委員 質疑하여 주십시오.

金種求 委員 質疑하십시오.

○金種求 委員; 연일 內務局所管 5課에 대해서 저희 同僚委員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本 監査委員은 現場監査가 아닌 政策監査를 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을 먼저 지적하고 關係公務員들의 答辯 과정을 볼 때 좀 더 時代現況을 정확히 판단해서 市民의 要求가 대변되는 議會 監査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앞으로 行政刷新은 물론 공정한 業務를 특히, 內務局에서 펴주시기 바라면서 本委員은 시간관계상 是正要求事項,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등 4건, 감사건의사항, 人事 투명제도 도입 등 4件, 기타 2件을 지적하여 제출하였으니 執行部에서는 참고하시고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專門委員도 意見書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質疑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金在京 委員 質疑하십시오.

○金在京 委員; 中區出身 金在京 委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行政事務監査의 자료준비와 答辯에 임하는 內務局長을 비롯하여 關係公務員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會에서의 行政事務監査는 千百萬 市民으로부터 위임받은 市民의 代表機關으로서 市民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엄숙한 任務의 수행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本委員은 서울市의 기본인 人事에 관하여 몇 가지 事項을 質疑하겠습니다.

어떤 組織에서든지 人事는 萬事라고 하였습니다. 首都 서울의 대형기구인 서울市에서도 人事가 잘 되어야 이 거대한 組織이 원활히 잘 움직일 것이며, 人事가 잘못되면 우리 人間의 몸과 같이 동맥경화나 고혈압 증상 등이 발생하여 막히고 끊기고 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組織 中에서 말단의 세포조직이 잘 움직여 줘야 그 組織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市의 末端組織에 속하는 雇傭職 公務員과 技能職 公務員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단순노무에 從事하는 雇傭職 公務員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에 몇 명이나 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公務員을 둘 수 있는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本委員이 알기로는 各 區廳에 防犯隊員이라는 公務員이 있는데 그 분들의 소속과 신분은 어떠하며, 그 분에 대한 報酬와 그 財源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고 있는 일이 각 과출소에서 防犯활동을 돕는 경찰업무로서 國家事務를 執行한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전면 地方化時代에 國家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內務局長의 소견과 앞으로의 計劃에 대해서 答辯을 들어보겠습니다.

세번째로 技能職 公務員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技能職 公務員은 서울시 5萬 3,400 公務員 中 29.3%에 해당하는 1萬 5,650名이 되며, 서울시 組織에서 기능업무를 담당하며 주종을 이루는 공무원입니다. 市政의 말단에서 하위직에 속할 뿐만 아니라 맡고 있는 업무도 거의가 현재 社會에서 말하고 있는 30가지職種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며, 그 職級도 6等級이 최고 높은 職級으로 그 이하의 下位職級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組織의 저변을 이루는 職種의 公務員입니다.

이분들이 사기가 진작될 때 公務員의 사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技能職 公務員에게는 승진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이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一般職公務員은 결원이 있을 때마다 1년에 1會 이상 승진 소요 년수에 도달한 직원은 승진이 있었는데 技能職은 92年 9月 1

日 일제히 승진시킨 이후 승진 所要年數가 도달하여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技能職 공무원의 불이익을 초래시키고 있는데 내무국장께서는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울시 또는 自治區 廳舍建物에 관변단체가 점유하고 있는現況과 94年度 國務總理指示에 의거, 일제히 정리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리되지 못한 團體와 그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副團體長의 職級 및 團體長의 이상차등 적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地方自治團體長 직선과 관련 부단체장의 지급, 단체장의 보수 및 비서요원 정원기준을 行政需要를 고려하지 않고, 상주인구수만을 적용해서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한 불합리성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습니다.

즉, 副區廳長의 직급 기준은 관련 근거에 地方自治法 施行令 附則 第3條, 人口 50萬 이상은 2級 이사관, 인구 50萬미만은 3級 부이사관, 인구 15萬 미만 4級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區廳長의 보수기준은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자치구 副區廳長 계급의 즉 상위계급의 최고 호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50萬 이상 2級으로 21號俸에 해당합니다. 171萬 1,000원, 인구 15萬 이상 2級 23號俸으로 157萬 6,000원, 인구 15萬 미만 3級 25號俸일 때 145萬 3,000원, 이것은 인구기준일이 1995年 1月 1日부터입니다. 區廳長 비서요원 정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內務部의 지침에 따르고, 인구 50萬 이상 4名, 별정 5·6·7級, 技能職, 그리고 인구 30萬 이상 3名, 별정 6·7

級 技能職, 다음 인구 30萬 미만에 2名, 별정 6級, 技能職 이렇게 주민등록 인구수만 기준하여 자치구의 두 단체장의 직급과 공무원 정수 등을 책정한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를 검토·재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우리 서울 中區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서울 25個區에서 가장 적은 15萬千餘名에 불과합니다. 1日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20배가 넘는 약 350萬名에 이르고 있고, 자치단체는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까지 감안할 때, 그 행정수요가 매우 복잡 다양하므로 이는 自治團體의 실정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규정으로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質疑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慶奎福 委員 質疑하십시오.

○慶奎福 委員; 慶奎福 委員입니다.

行政監査 준비하시느라고 局長님을 비롯한 關係職員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많은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質疑內容은 體育施設 設置現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質疑하였던 바, 答辯은 生活體育施設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하여 자치구의 여건에 맞도록 구민체육센터는 區別 1個所 이상을 건립토록 하고, 동네 體育施設은 1996년에 65個所와 1997年 이후에는 區別 1個所씩 每年25個所 이상을 擴充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市民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강서구 체육센터 건립에는 서울시의 시비가 16億원이나 배정되었는데도 現存 位置 선정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공사중이라고 답변한 것은 참으로 성의 없는 감사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몇 천억 단위로 紙上에 나니까. 16億원은 아주 적게 생각들 하고 계신 모양인데, 만약에 內務局長님을 비롯한 職員 여러분들이 거출한 자금이라면 그렇게 성의없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내무국장께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崔光雄 委員 質疑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崔光雄 委員; 崔光雄 委員입니다.

먼저 團體長을 직선하게 됨으로 해서 市廳, 區廳間의 원활한 業務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우리 內務局長 業務報告,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 答辯이 있었습니다만 本委員은 물론 어제 車星煥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 自治區와 特別市 稅目조정, 세목교환 문제때 言論에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또 本委員이 秘書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 점잖게 車星煥委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趙淳 市長이 江南區, 瑞草區, 두 區廳長들한테 한마디로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市 국장들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간부회의때 조시장께서 역정을 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第81回 臨時會에서 이 條例를 하나 개정했습니다. 자치구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特別交付金을 5%에서 10%로 늘려가지고 소위 民選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각 區廳이 서울市 대해서 대등하게 지나치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特別交付金 비율을 상향조정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한 번 혼 줄을 내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내년에 96年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니까, 瑞草區와 江南區는 보통교부금은 말할 것도 特別交付金 한푼도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833億중에서 255億 5,500萬원이 수시 지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96年度 중에서 特別財政需要를 대비 위해서 배분을 유보하였는데 예컨대 三豊事故라든지 뭐 水害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받은 제보 중의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瑞草區에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區廳長께서 그 지역의 실세 국회의원을 모시고 어떤 행사장에서 우리가 서초구 재산을 서울시에 빼앗길뻔 했는데, 우리 議員님의 노력으로 우리 출신 議員님의 노력으로 잘 막았다.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어요. 말하자면 서울시와 各自治區가 적대적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정당여부를 떠나서 民自黨이다, 民主黨이다, 뭐 國民會議다, 정당 소속을 떠나가지고 이 本委員도 서울시 議員 몇 달 해보니까 정당간에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政治的인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호 협조해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江南쪽이 처음에 개발될 때 누구 돈으로 개발했어요. 江北사람들 세금 거둬가지고 개발했잖아요. 그런 은혜도 모르고 배은 망덕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문자료가 있습니다. 10月 17日字 동아일보 신문자료인데 구청간 빈부격차, 예산편성 희비, 강북구청은 숙원사업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강남구청 같은데는 뭐 돈이 남아가지고 일반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그 안전점검 공짜로 민간주택 해준다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돈 남아 도는 이런데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우리 내무부에서 혹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 현재 배분한대로 특별교부금은 한푼도 주지말고 본때를 보여야 돼요. 江南區나 瑞草區 같은 경우에는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局長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金東洙 幹事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民防衛協議會에 관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民防衛基本法 第6條 同施行令 第2條, 시행규칙 第2條에 중앙 및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명직 이외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고 되어있냐 하면 民防衛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民防衛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大統領 訓令 및 동 세부 시행규칙에 보면 이 서울 市 민방위협의회 총무담당 간사가 내무국장이시고 각 구청에 민방위협의회 총무담당 간사가 각 구청의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보니까 위촉직으로 농협지점장 또는 지소장, 전신전화국 또는 우체국장, 의료업체 병원의 대표, 건설 및 수송업체 대표,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노조, 여성계 대표, 예비군 향목회 정훈장교 등등으로 위촉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맞게 우리 서울특별시가 민방위협의회는 뭐 이 자료 보니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金東洙 幹事께서도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각 구청이 엉망입니다. 위촉한게요.

이 本委員이 엇그저께 감사실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상업은행 한 번 혼쬌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이 몰려 있는 우리 金在京 幹事님의 지역구인 중구에 보면 조흥은행, 서울은행, 한국은행, 외환은행, 농협, 5개 은행의 본점에 안전실장 민방위 업무담당 부서장이죠. 안전실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은행, 상업은행의 안전부장, 여기도 민방위 업무담당자죠, 이분들이 협의회 委員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상당히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25개 구 중에서 유독 7개구에서, 7개구가 어디인가 하면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강서, 서초, 송파입니다. 이 유독 7개구에서만 다른 은행은 하나도 참여 안해요.

다른 은행은 하나도 참여 안하는데, 상업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도 민방위 업무담당자, 은행에서는 매월 15일 민방위훈련을 하면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데는 서무계장, 민방위 주무가, 어떤 데는 총무담당 대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맞죠. 이해가 되겠는데, 支店長들이 참여해요. 법령에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기타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유독 7개구에 상업은행 지점장들이 민방위에 관해서 훌륭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그 물론 財政經濟委員會에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해 가지고 그 월요일 本會議 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은행 1915년부터 80年 동안 시금고로 있어 오면서 썩어빠지고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유착의 증거들이 아니겠는가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金東洙 幹事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찬조금을 낼 것 아니에요. 상업은행 지점장들 참여

해 가지고 분명히 찬조금을 낼 거라고요. 회비인지 무엇인지, 우리 行政課長께서는 각 구별로 이 상업은행에서 얼마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구청은 얼마큼 내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최근에 5年, 10年것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해 가지고 내주시고, 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들 아까 민간기업체들 그 지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료업체 병원대표라든지 건설 및 수송업체 대표, 이 부분만 민방위에 필요하니까 특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민간기업 대기업 사장들이 그 구청 민방위협의회 위원입니다. 명목상 위원이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돈 내라는 얘기에요. 소위 얘기해서, 그것을 비율로 따져 보니까 25個區 總 1,222名 中에서 761名 비율로 따지면 62.3%가 이런 사람들예요.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本委員이 회사에 비상실장, 안전실장, 안전부장, 총무부장, 사무국장 등 민방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업체는 뺐어요. 이것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저명한 회사 사장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 해보니까 62.3%나 돼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게 아닌가? 서로 돈 주고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상업은행이 좀더 혼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혼좀 나야 돼요. 상업은행에 서울시와 各 區廳에서 廳舍에서 상업은행에 賃貸를 줍니다. 市金庫이기 때문에. 市廳쪽은 계산을 죽 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市廳 本館 太平路支店 연간 임대료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12월로 나누어서 평당으로 환산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1萬 7,500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위 時價 計算할 때 예컨대 월20萬원이면 전세로 쳐서 1,000萬원 아납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委員님들

도 알기 쉬우실텐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550萬원입니다. 평당. 그러니까 우리 市廳 本館은 어느 정도 임대료가 알맞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各 區廳은 엉터리가 많아요. 턱도 없이 싸게 준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本委員 出身區인 道峰區같은 경우는 지금 區廳도 없어서 區廳 자체를 賃貸하고 있는데 전체 賃貸한 중에서 商業銀行에 임대해 준 것을 보니까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315萬원, 적정하게 道峰區 외곽지역이니까 평단 315萬원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지역, 오히려 도심지역이지요. 江北區廳은 평당 112萬원밖에 안 돼요. 우리 內務局長님 江北區廳 어디 있는지 아시죠? 유일한 도봉, 江北地域의 商業地域이고 중심가입니다. 아주 소위 말해서 목 좋은 데예요. 그런데 평단 112萬원 밖에 안 돼요. 廣津區는 최저 임대 평당 79만원이에요. 蘆原區廳 자리가 道峰區보다 훨씬 자리가 좋아요. 물론 공식적인 것인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에 本委員이 몇몇 부동산 공인중개사들한테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대개 그 정도면 평당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가, 다 물어 봤는데 턱도 없이 싸게 주고 있더라구요.

물론 절차상 그 財務會計規則이라든지, 이러한 절차상은 아무 하자없이 해 놨을 거라구요, 물론. 서류 뒤져서 監査해 봐야 걸릴 건덕지는 없겠지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상업은행과 그동안 市하고는 우리 市議員들이,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의 훌륭한 위원님들이 의혹 파헤치고 하니까 市에서는 뭐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나본데 區廳은 아직도 舊態依然해요. 이것 좀 파헤쳐서 한 번 정밀하게 調査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各 區別 기부채납해서 사용하고 하는 여덟 군데는 빼고 나머지입니다만 여기 한 번 다 調査해서 우리 부동산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뱅크라든지, 여기하고 調査해서 적정한 賃貸料가 어느 정도 되는데 차액이 얼마만큼 되고, 區廳들 전부 환산해서 연간 얼마씩 사실상 時價로 계산해서 얼마큼 손해보는가 해서 우리 行政課長님과 같이 言論에 한번 報道도 내고 상업은행 좀 혼쫓 냅시다.

이상 더 있습니다만 우리 監査進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委員長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질문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이상으로 委員님들의 質疑를 종료하고 被監査機關의 성실한 答辯準備를 위하여 잠시 監査를 중지한 후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監査中止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40分 監査中止)

(16時 34分 監査繼續)

○委員長 吳世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內務局長은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浩助; 오늘 여섯분의 委員님께서 質疑 하셨습니다. 質問順序에 따라서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俊 委員님께서 답변은 바라지 않았습시다만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문제, 위화감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에 계속 참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市 불법주차 과태료 미징수액이 60%로 386億원이 되는

데 이는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과잉단속으로 앞으로 不法 駐車 過怠料 부과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징수한 過怠料 사용처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不法 駐車 過怠料 징수는 적발, 차적조회 독촉장 발부 절차로 當該 年度 징수율이 40% 정도 되는 것이 사실이고, 過年度부터 2차 독촉과 압류 등으로 현재 60%정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단속대상 지역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駐停車 禁止區域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할 때 過剩團束問題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市內 交通이 하도 어려워 가지고 그 解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駐車團束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市의 方針과 區單位 실정을 감안해서 駐車團束이 강조되고 있고, 일선 公務員들이 현장에서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차량이용자들의 그 이용실태, 또 급박성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께 상당한 교양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도 감독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年度 이 주차단속을 통해서 들어온 세입은 주로 주차장 건설, 구획선 정비, 인건비, 경상비, 기타 주차단속원 제복, 안내표지 등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東洙 委員님께서 직원수련원 건립 사업비가 상당한 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수련원 건립과 관련된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또 각종서류를 제출요망하셨고, 수련원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것이 아닌가? 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수련원 건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획을 변

경해서 예산증액을 가져온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계획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먼저 趙淳 市長님 취임 후 업무 보고서에 수련원 건립수준을 인근 여타 수련원 수준 이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는 民選市長님의 결단이 있으셔서 가지고 당시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온천수 개발이라든가, 자연석마감 조경, 수영장 건설 등 공사가 추가된 면도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련원 규모가 크고 또 委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위원님께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만들어서 위원님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洙 委員;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만, 서면 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삽입해 주세요.

○內務局長 李浩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洙 委員님께서 서울시에서는 市民의 體育增進을 위하여 마을 뒷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이 있어서 體育施設設置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일선 실정을 감안할 계획을 말해 달라는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健康과 體力增進을 위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기지역의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市에서는 시민들께서 생활주변에서 쉽

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 뒷산 등 공지나 묘지 옆에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네뒷산은 대부분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都市計画法 施行令規則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철봉, 평행봉 등 체육단련시설과 배구장, 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정도 운동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은 관계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자치구에 대한 指導·監督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金東洙 委員님, 崔光雄委員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防衛協議會 構成運營에 대해서 質問해 주셨습니다.

防衛協議會는 大統領訓令 第28條 規定에 따라서 유사시에 군·관·민 합동전시체제 운영 등 地域防衛對策과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별로 防衛協議會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鍾路區廳에 확인했습니다만 정기적인 회비는 거출하지 않고, 軍部隊慰問이라든가, 을지연습 참관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때 그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防衛協議會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防衛協議會 主務局이 민방위국이고 해서 별도로 民防衛局長께 委員님의 말씀을 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崔光雄 委員님께서 區 防衛協議會 구성에 있어서 부적정성과 회비운영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主管部署인 民防衛局長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委員님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來 委員님께서 是正要求事項과 建議事項에 대해서는 行政事務處理業務指針에 따라서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在京 委員님께서 부단체장의 職級, 단체장의 보수 및 비서요원 정원기준을 상주인구만을 적용하여 차등을 두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特殊性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상주 인구에 따라서 부단체장의 職級, 團體長의 보수, 비서요원들의 기준은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市에서는 이미 總務處와 內務部에 관계규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 규정이 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委員님께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金在京 委員님께서 市廳舍建物에 관변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이들 사무실을 정리 못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廳舍 內의 入住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키 위해 사무실을 95年末까지 정리토록 해당 團體에 通報해서 이전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망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런 기간내에 완벽하게 정리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꾸준히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在京委員님께서 서울시의 雇傭職公務員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근무하고 있으며, 방법원은 각 구에서 신분을 유지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地方化時代に 있어서는 國家事務 警察업무에 自治區가 경비를 負擔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質疑를 해주셨습니다.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은 방법원, 사원을 말하며 현재 本廳 사업소에는 근무치 않고 自治區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9年 5月 10日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한 고용직의 기능화 조치에 따라서 고용직 중 자격증소지 또는 경력 3年 이상은 전원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 미취득으로 技能職化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고용원들에 대해서는 行政指導를 통해서 資格證을 取得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특별 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方法원의 所屬은 區廳 所屬이고 재원도 自治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區廳 所屬 方法원의 업무가 國家事務인 警察業務인 점에서 그 所屬과 經費 부담을 國家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方法원의 警察廳 所屬으로의 신분 전환은 지금 당장은 政府基金이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도록 政府에 건의해서 自治區의 財政負擔을 덜어주는데 市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技能職 公務員에 대해서 92年 昇進이후 아직까지 昇進이 없어서 이에 대한 技能職들의 不利益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技能職 公務員에 대한 昇進이 92年 9月 1日 대폭 昇進한 후 3年間 昇進이 없었으므로 타 一般職 昇進과 형평성과 士氣振作을 위한 昇進 기대 등으로 기능직들의 昇進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昇進에 필요한 상위등

급 정원의 기관별 불균형 또는 직렬별 상위 등급의 격차로 현재 여건대로 승진을 실시한다면 불합리한 승진이 초래되어 오히려 승진에 누락된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속자가 승진할 수 있고 또 機關 및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관별로 골고루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위등급의 정원을 확보한 후 승진을 실시하면서 균형 있는 승진과 이들의 사기를 형평성 있게 진작시켜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慶奎福 委員님께서 江西區民 體育센터는 아직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사중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江西區民 體育센터는 江西區 내발산동 17번지 우장산근린공원내에 정해서 94年度 8월에 着工節次를 펼쳤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95年 5月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宅地開發地區內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區民體育센터를 공사중으로 표시한 것은 일단은 94年 8월에 着工節次를 밟았다는 것을 표기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光雄 委員님께서 特別交付金 수시 교부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豫算은 재발생 등 特定需要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이 월등한 江南, 瑞草區 등에서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委員님의 말씀하신 대로 瑞草, 江南區 등에는 이미 재정수요 이상으로 재원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해결

하도록 特別交付金은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光雄委員님, 현재 각 구에서 區廳舍를 상업은행에 임대하고 있는데 구별로 賃貸價格차이가 많은데 대해서 조사하라는 어떤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區廳舍는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區有財産管理條例에 의해서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산정 후 區公有財産審議委員會의 議決로 가격을 결정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대가격의 구간 심한 격차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財務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財務局長과 협의하겠습니다.

崔光雄委員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최종학력 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후 임용등록시 추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응시자, 구비서류로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시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응시원서 이외는 최종학력 증명 등 별도의 구비서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人事規則 第11條에서 제시토록 한 최종학력 증명서 구비서류는 1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토록 한 것이며 이는 면접시험 전 응시원서에서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학력 등 기재사항의 사실확인과 시험점수가산 특전대상 유무 등을 확인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때 제출된 각종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任用者 등록시 제출을 생략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現職 3級이상 公務員의 출신지와 91年 이후 95年 6月 30日 까지 재직한 區廳長 및 4級 公務員의 출신지를 15個 시도별

로 통계표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배경도 지역감정 해소라는 그런 특히 人事에 있어서 정성을 기울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政府次元에서도 88年 2月 10日 總理令 第343號로 公務員 인사기록카드상 본적지란이 삭제되어 그 이후는 출생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任用候補者 등록원서 양식의 본적지란이 있는 것은 구 서식으로서 미처 저희들이 민첩하게 개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서 가제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위원님께 감사종료 후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채자에 대한 구비서류 중 호적등본 제출은 그 용도가 警察廳 신원조회 첨부서류로 제출용이라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활력있는 勤務는 충분한 휴식이 前提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울시 公務員의 연가사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本廳, 事業所, 自治區別로 職級·職列別 연가사용일수를 상세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市 公務員의 연가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휴식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質疑하신 사항은 짧은 기간내에 本廳, 事業所, 自治區 全職員에 대해서 조사해서 答辯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調査해서 서면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중인 전문직 公務員의 95年度 봉급명세 및 연봉을 밝히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專門職 公務員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專門職은 地方自治團體와의 채용계약에 의해서 日程期間 調査, 研究, 技術業務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專門家를 말하고, 등급별로는 가급에서 마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市에서 채용한 專門職 公務員의 주요담당업무로서는 병원의 진료의사, 交通放送本部 방송요원 및 消防本部 헬기 조종사 등 20個 분야, 28개 부서에서 현재 한 260여명의 專門職 인력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가급이 92名, 나급이 66名, 다급이 21名, 라급이 37名, 마급이 42名입니다. 봉급명세를 말씀드리면 가급은 113萬 6,000원 이상, 나급은 90萬 8,000원 이상, 라급은 생략하고, 마급은 69萬 7,000원 이하로 등급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봉급명세서와 연봉산출이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專門職 公務員의 개인별 俸給額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書面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政府가 후원해야 할 國家單位 行事와 中央政府가 비용을 내놓아야 할 各種 行事에 우리 서울市가 부담하는 돈이 적지 않은데 中央政府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용의가 없는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國家가 주관하는 行事 中 서울市가 부담하는 行事는 地方 행사와 연계되어 있거나 서울市와 함께 하는 行事가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首都 서울로서 서울市的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와 우리 市民과 더불어 하는 行事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政府支援 行事中 大統領 巡訪行事 支援經費는

國家元首에 대한 예우와 서울 市民의 안녕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옥상기와 가로기 계양에 불과하고 이는 市廳舍와 가로 등의 施設 管理 주체가 地方自治團體로서 부득이한 事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政府支援行事등에는 關係 部處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市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官用車輛 中 운영실적이 낮은 車輛을 감축해서 經費를 절약하고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車輛의 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儀典 등 行事時 지원되는 車輛과 현장 합동순찰 및 교통지도 등 특별한 現況에 따라 운행되는 車輛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市 소유차량은 官用車輛管理規則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車輛은 그 실태를 분석해서 점차 감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러한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市議會는 물론이고 執行部 廳舍도 무척 부족해서 근무환경이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95年 12月 11日까지 舊大法院廳舍가 우리 市로 인계됨에 따라 내년도에 노후된 시설과 사무실을 補修해서 廳舍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市議會의 부족 廳舍 해결을 위해서 전용면적 1,200여 평에 해당되는 독립된 건물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特別市人事 및 보통 懲戒委員會運營規則 제3조제5항의

신설 이전,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 위촉의 상세 내역 및 개인별 인적사항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 당원 및 地方議會議員은 人事委員會 委員으로 위촉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地方公務員法 제7조제4항에 당원 및 地方議會議員은 人事委員會 委員으로 위촉할수 없게 되어서 93年 12月 27日 신설했으며, 95年 7月 이후부터는 同條項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95年 7月 1日 이전에 위촉된 人事委員會 委員 中 정당원이나 地方議會議員이 위촉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人事委員會의 關係法令에 따라서 정당원이나 地方議會議員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世根;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質疑 申請이 없으므로 內務局所管에 대한 質疑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監査에서 지적된 事項에 대하여는 조속히 是正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 대하여 行政事務監査를 10時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內務局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終了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03分 監査終了)

○出席監査要員

吳世根 金在京 金東洙 金明坤

金永俊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呂鼎九 鄭海純 高光哲 成聖鏞

李建行 車星煥 崔光雄 慶奎福

○專門委員

鄭文孝

○被監査機關參席者

內務局長 李浩助